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330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희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2,142,857원의 한도 내에서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92,142,85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21), 3항 및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망 C의 배우자로, 망 C의 자녀인 B, D과 함께 망 C의 공동상속인이다.

2) 가) 원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은, B가 2007. 11. 15.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B에게 양도소득세 527,624,1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 산하 용산세무서장과 양천세무서장은, B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B에게 총 14건의 양도소득세(합계 3,080,047,490원)를 부과하였다.

다) 2021. 3. 30.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다음 기재와 같다.

관할	세목	납부의무 발생연도 (귀속연도)	고지세액	채납액
용산	양도소득세	2007년	527,624,160원	238,485,16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2년	111,834,460원	194,552,29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2년	29,897,740원	50,033,69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3년	1,147,752,050원	1,920,762,85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3년	635,659,650원	1,063,776,04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3년	862,919,870원	1,444,095,88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3년	351,310원	361,84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4년	36,676,550원	60,057,44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4년	57,885,340원	94,526,62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4년	71,622,590원	116,959,40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4년	37,302,630원	60,914,88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4년	32,274,070원	52,557,88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4년	41,789,060원	67,050,060원
용산	양도소득세	2015년	5,047,880원	8,265,510원
양천	양도소득세	2013년	9,034,290원	10,592,560원
합계			3,607,671,650원	5,382,992,100원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7. 6.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을, 자녀인 B, D이 각 7분의 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2) 피고, B, D은 2018. 2. 2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2번 및 6번 부동산을, D이 별지 목록 기재 1번 및 5번 부동산을, 피고와 D이 별지 목록 기재 3번, 4번, 7번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2021. 3. 30.) 1년 이전에 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용산세무서가 2018. 8. 24.부터 2018. 11. 26.까지 망 C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 C의 상속인으로 피고, B, D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사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와 상속재산과 관련된 임대차관계 등의 파악이 이루어진 사실, 용산세무서가 2019. 1.경 피고와 D에 대하여만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넘어 국세청 징세관실 담당공무원 또는 용산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B의 채무초과상태까지 알았다거나,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갑 제9,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국세조사관 J가 2020. 12. 22.경 K은행, L조합 등에 B의 ‘2017. 6. 1.부터 회신일까지’의 모든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상대방 등의 거래정보를 요구한 사실, J가 2020. 12.경 B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혐의 등이 있어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 검토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 J가 2021. 1. 7.경 용산세무서에 상속결정결의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국세청 징세관실 담당 공무원은 2020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B의 채무초과상태 및 사해의사에 대해 어렵듯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여부

1)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8. 2. 28. 당시 B가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아래 각 표와 같고, 그 평가액이 합계 370,014,047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상세	평가액
부동산	서울 용산구 M, 9층 N호	9,349,000원
	서울 용산구 M, 9층 O호	9,349,000원
	서울 용산구 P, 11층 Q호	82,857,143원
	서울 종로구 R, S호	5,571,514원
	서울 마포구 T, U호	25,714,286원
	군포시 V, W호	21,142,857원
	군포시 X, Y호	53,000,000원
	안양시 동안구 Z, AA호	163,000,000원
예금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20,222원
	L조합(계좌번호 2 생략)	10,025원
합계		370,014,047원

2) 소극재산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8. 2. 28. 당시 B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국세체납액 본세(고지세액)만 3,607,671,650원이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가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중 2/7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는 2012. 6. 20.경 투병중인 망 C의 카드를 절취하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고 타인에게 송금하였고, 망 C가 사망한 당일과 다음날에도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고 타인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와 D이 항의하자 2018. 2. 8.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며, 피고와 B는 접촉이 전혀 없어 B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2호증은 망 C 명의 계좌(K은행, (계좌번호 3 생략))의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피고의 선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 6항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

1)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0. 12. 21.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이전인 2016. 7. 1. 주식회사 K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7. 3. 10. 주식회사 K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이후인 2018. 7. 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5. 피고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8. 7. 2.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9. 6. 10.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3, 4, 6항 기재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원물반환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2).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 6항 기재 부동산 관련 가액배상의 범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3. 30.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5,382,992,100원이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한 조세채권액은 그보다 크다.

② 공동담보가액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 6항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7분의 2)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목록	상세	공동담보가액
제2항 (제3항 포함)	서울 용산구 M, 9층 O호 (제3항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 포함)	17,857,143원
제4항	서울 용산구 P, 11층 Q호	41,428,571원
제6항	서울 마포구 T, U호	32,857,143원
	합계	92,142,857원

③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과의 비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5,382,992,100원이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 6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92,142,857원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가액 21,142,857원3) 을 더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공동담보가액보다 큼은 계산상 명백하다.

④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92,142,8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와 B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92,142,8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2,142,85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병휘, 판사 정한영

별지

1)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 제2항을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하였다가, 2021.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의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청구원인의 기재에는 변동이 없는바, 2021.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7분의 2) 가액은 21,142,857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